

2007. 6.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1부.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또는 날인) *유영화*

의 2인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안발의서명서		
김영재	S. Yeong-Jae	
성명중	성명중	
김영중	김영중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의안번호	1156
------	------

발의연월일 : 2007. 6.
발 의 자 : 유영화 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노사평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관내 전기업체에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2조 제1항(시상부문)
 - 시상부문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3개부분으로 하며, 필요시 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
- 제3조(시상시기)
 - 시상 시기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
- 제4조(시상대상)
 - 시상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기여한 자
- 제5조(후보자 추천)
 - 후보자 추천은 읍·면·동장 및 관내 기업체 및 노동단체

3. 관련법규

- 해당없음

붙임 1.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1부.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제천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평화상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등 3개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며 필요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상은 부문별로 각1명(단체, 기업체)씩 시상한다.

제3조(시상시기) 평화상 시상 시기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 한다.

제4조(시상대상) 시상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단체와 개인 및 기업체로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관내기업체와 노동 단체가 추천한다.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제천시공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 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의안번호	1156
------	------

발의연월일 : 2007. 6. .
발 의 자 : 유영화 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노사평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관내 전기업체에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2조 제1항(시상부문)
 - 시상부문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3개부분으로 하며, 필요시 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
- 제3조(시상시기)
 - 시상 시기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
- 제4조(시상대상)
 - 시상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기여한 자
- 제5조(후보자 추천)
 - 후보자 추천은 읍·면·동장 및 관내 기업체 및 노동단체

3. 관련법규

- 해당없음

붙임 1.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1부.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제천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부문) 평화상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등 3개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며 필요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상은 부문별로 각1명(단체, 기업체)씩 시상한다.

제3조(시상시기) 평화상 시상 시기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 한다.

제4조(시상대상) 시상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단체와 개인 및 기업체로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관내기업체와 노동 단체가 추천한다.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제천시공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 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